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장애학생지원센터), 02-970-6054

제정 2012. 9. 1.

학칙 개정 2020. 3. 13.

개정 2020. 5. 21.

일부개정 2023. 2. 22.

일부개정 2023. 8. 14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9조에 따라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결정한다.
 - 1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
 - 2. 장애학생의 개인별 교육 지원계획<신설 2023. 8. 14.>
 - 3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<개정 2023. 8. 14.>
 - 4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8. 14.>
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23. 2. 22., 2023. 8. 14.>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학생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단과대의 학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다음 특정 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<신설 2023. 8. 14.>
- 1.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학생복지 등 관련 교직원
- 2. 재학중인 장애학생
- 3.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
- ③ 당연직 위원은 일반대학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도서관장, 정보 전산원장, 취업진로본부장, 생활관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된다.<개정 2023. 8. 14.>
- 제4조(임기)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한다.<개정 2023.
 2. 22.>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본교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3. 2. 22.>
- 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장애학생 지원센터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제8조(심사청구)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총장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(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)과 이 법을 위반하는 총장 또는 교직원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(별지 제1호 서식)를 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 게 심사결과통지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
 -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⑥ 총장, 교직원,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.
- 제9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심사대상 청구사건의 책임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- 제10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 <개정 2023. 8. 14.>

부칙(제138호, 2012. 9. 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20호, 2020. 3. 1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37호, 2020. 5. 2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738호, 2023. 2. 2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759호, 2023. 8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